

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8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3. 10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3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3. 2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법사랑위원의 단체 명칭 및 관장사무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단체 명칭 변경

-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

→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

- “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” → “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”

나. 목적 규정에서 단체명과 관련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부분 삭제(안 제3조)

다. 상위법령에 맞춰 관장사무 정비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

-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 규정

나. 예산조치: 2차 추정시 확보 계획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4963(2023. 2. 3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2-157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2. 1. ~ 2023. 2. 2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첨부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첨부

5. 본문: 붙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조례 개정의 취지

- 범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명칭 등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단체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 내용 검토

- 제명 변경 및 단체 명칭 변경
 - 법무부훈령 제1359호 「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」 제15조에 따라
 - 지역협의회 명칭 ‘범사랑 지역연합회’ 를 ‘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’ 로 변경
 - 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 ‘고성군 범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’ 를 ‘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’ 로 변경함.
- 관장 사무 정비(안 제4조)
 - 「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」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관장 사무로 규정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「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」에 따라 제명,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「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」 제26조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군(君)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. 고성 지역단체임을 부각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의 필요성과 실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지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>

제26조(지구위원회) ①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도·농 복합지역, 도서지역, 군(郡)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, 재정 여건,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구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,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원안가결 함.